

제 호

품질검사기관 지정서

-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- 상호:
- 사업자등록번호:
- 소재지:
- 검사분야:
- 검사유종: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